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2021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 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2년 4 월 15 일

학교법인 신흥학원

감사 오 명 희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4463호)

감사 지 후 식

피감사자 (임회인)

직명 법인사무국장

성명 김 준 기

[별지 제2호 서식]

학교법인 신흥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1회계연도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1. 법인 일반업무회계 : - 선급법인세 환급액 교비회계 미전출 2. 법인 수익사업회계 : 지적사항 없음	- 미전출된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교비회계 전출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안현수 직인 (사인) 	

[별지 제3호 서식]

신한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1회계연도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1. 교비회계 : - 타인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 (2필지) 2. 부속병원회계 : 해당없음	- 가등기 되어있는 상태의 토지(농지)를 교지로 등기하고자 시설·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결정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협의 진행 예정
피감사기관장 신한대학교 총장 강성중 직인 (사인)	